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개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n the Checklist of the Public Library Facilities
for User with disabilities

김보일,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김선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Kim Bo-I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im Sun-Ho,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초록>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은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지금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정보가 이용가능하다 (Philip Gill 저. 장혜란 역. 2002).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장벽에 맞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 이용을 위한 어떠한 불편도 제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기준에 따른 최대한의 설치와 그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실제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은 설치 부족, 규정에 어긋난 설치 그리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오히려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 있어 장애에 따른 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의 분석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공공건물로서의 일반적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전자의 체크리스트 항목 개발을 위해서는 편의증진법과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라 함) 제 2장과 제 3장에 따라 작성된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이하 ADAAG라 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함)」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건물로서의 시설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들이었음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항목은 구체적인 기준 미제시와 필요 조사항목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자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후자의 체크리스트 항목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체크리스트 조사항목 중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부분을 차용하고, 도서관정보관리편람, 한국도서관기준, ADAAG, 미국 건축 및 교통 장애물 법규 준수 위원회(ATBCB: United States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의 미국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에 근거하여 제작한 개축 및 보수지침서(이하 UFAS라 함),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이하 ALA라 함.)에서 발행한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편의증진법의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체크리스트에서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정보 접근을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수집된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도서관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이 가진 본래의 기능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추적과 지역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공중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습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김정희, 2003). 이와 더불어 모든 이용자가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접근을 돕는 시설 지원 기능과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생활 편의센터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어 진다(이진영, 2001).

2.2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장애인의 개념은 그 사회의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은 국가 마다 천차만별이며 장애의 유형도 다양화 되어 장애인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편의증진법 제2조 1항에서는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UN은 장애인이란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이 선천적이건 또는 후천적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일상적인 개인별 또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또는 부분적인 것마저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전재봉, 2002).

따라서 장애인은 선천적이건 후천적 간에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장애 유형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장애법주의 확대 실시에 따라 기존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 신장, 심장의 10종에서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가 추가되어 법정 장애인을 15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장애의 유형을 위에서 조사된 여러 유형의 장애 중에서, 특히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으나 시각, 청각, 언어, 행동, 그리고 보행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와 인지 그리고 기억력 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조사된 장애의 유형 중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는 장애의 유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정신질환과 관계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도서관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재봉, 2002).

이에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장애의 유형으로 (1) 휠체어 사용 장애, (2) 시각 장애, (3) 청각·언어 장애, (4) 보행 장애, (5) 정신지체 장애, (6) 기타 장애로 구분하였다.

2.3 편의시설의 개념 및 기능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편

의시설의 설치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과 설비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동의 편리함과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권적 기본 시설로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신체적 편리함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비교 분석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는 공공건물로서의 일반적인 편의시설과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개발에 앞서 체크리스트 기준의 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법률적 기준(편의증진법 및 관련 법률)과 미국의 ADAAG, UFAS¹⁾ 그리고 ALA에서 발행한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특히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에서는 대부분을 ADA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ADAAG와 중복되는 기준을 제외한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3.1 공공건물로서의 일반적인 편의시설

편의증진법에서는 제4조와 관련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1>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의무·권장)이다.

1) 국내 법률적 기준, ADAAG, UFAS 그리고 ALA에서 발행한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에서 세부기준 단위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를 밀리미터(mm)로 변환하여 표기함.

<표 1>에서의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라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하여 총 5개 영역 12개(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화장실에 포함) 종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기타 시설로서의 ‘(1) 관람석·열람석, (2) 접수대·작업대’를 ‘2.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에 포함하여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나머지 4개 각 영역에 따른 항목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편의증진법에 ADAAG, UFAS를 비교하여 보았다.

3.1.1 매개시설

(1) 주출입구 접근로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의 경우 덮개의 구멍 및 틈새 간격을 20mm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ADAAG에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기울기와 보행장애물의 설치기준에서는 편의증진법과 ADAAG의 차이가 미비하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주차시설에서 출입구까지의 유효폭을 1200mm 이상으로 제시하는 반면 ADAAG에서는 건물로 통하는 접근 경로 최소폭 920mm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의 바닥 기울기는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한다. 휠체어 및 경사로에 관한 기준은 ‘3.1.2 내부시설’ 중 ‘(4) 계단 또는 승강기’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정보 및 안내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근린생활 시설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표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증진법에는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가 차이를 30mm 이하로 제시하고 있지만 ADAAG에서는 12.7mm 이하로 제시하면서 편의증진법의 기준보다 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편의증진법의 수정 및 개정에서 현 기준보다 낮게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주출입구에 접근하기 위하여 경사로 및 승강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3.1.2 내부시설

(1) 출입구(문)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출입구(문)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손잡이가 레버형이거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ADAAG에서는 모든 손잡이와 잠금장치, 빗장, 기타 조작장치들은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입구(문)의 측면 활동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편의증진법은 600mm 그리고 ADAAG는 815mm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DAAG에서 출입문의 작동 및 조작을 최소한의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어 앞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2) 복도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복도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의 경우 손잡이의 규정을 요구하는 반면, ADAAG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으나 바닥에 카펫이나 카펫 타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U턴에 대한 규정을 ADAAG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과 보행장

애물의 항목에서는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크게 차이가 없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복도 및 통로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카펫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편의증진법에서의 편의시설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계단 또는 승강기의 손잡이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은 '(2) 복도'에서의 손잡이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3)-1 계단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계단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계단의 형태와 바닥의 재질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ADAAG에서는 그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 다만, UFAS에서 바닥의 재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잡이에 관한 연속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2 장애인용 승강기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내부 바닥 유효면적이 1400mm×1400mm 이하인 경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부착을 통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DAAG에서는 편의증진법 보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세부 기준에 관해 청각적 신호 장치·조명 장치·문자 등의 부분에서 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는 편의증진법에서만 그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ADAAG에서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항목이 없다.

(3)-4 휠체어 리프트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휠체어 리프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ADAAG에서 보다 휠체어 리프트의 전면 활동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은 ADAAG에 비해 작동장치 및 호출장치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5 경사로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경사로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경사로에 휴식참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ADAAG에서는 경사로가 바뀌는 곳에서도 휴식참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옥외 경사로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편의증진법에서 참고하여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3.1.3 위생시설

(1)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법에서는 세면대의 거울 경사도를 상단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반면, ADAAG에서는 물내림 장치 및 수도꼭지를 움직여 작동하는데 드는 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변기의 화장지 걸이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편의증진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편의증진법에서 보완하여 추가하여야할 기준들이다.

3.1.4 안내시설

(1) 점자블록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점자블록의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점자블록의 색을 황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ADAAG와 같이 인접 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의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안내시설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전자식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ADAAG에서는 표지판에 사용된 문자의 글자 크기, 글자 비율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ADAAG에서 제시한 기준은 편의증진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문자안내와 더불어 점자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편의증진법과 ADAAG 모두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정보·피난설비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정보·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에 ADAAG의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ADAAG와는 달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2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에서는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서가 및 기타지역(자료)’으로 구분하여 국내의 편의증진법, 도서관정보관리편람 그리고 한국도서관기준과 미국의 ADAAG와 ALA에서 발행한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3.2.1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편의증진법에서 요구하는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ADAAG에서는 고정좌석, 책상, 혹은 열람석의 5%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 하도록 장애인 접근로와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을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 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03.)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공간의 1좌석당 면적에서 각종 성인 및 청소년 자

료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용은 2.83㎡, 아동자료실에서 시각장애인용은 2.3㎡을 요구하고 있다.

3.2.2 서가 및 기타

도서관정보관리편람·한국도서관기준에서 요구하는 서가 및 기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ADAAG와 ALA의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도서관정보관리편람·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서가 및 간행물 전시대에 대한 휠체어의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DAAG와 ALA의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에서는 서가 및 간행물 전시대뿐만 아니라 목록과 터미널 그리고 서비스 카운터에 대한 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정보관리편람·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구성 비율,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환경의 구비 그리고 전문적인 장애인 봉사를 위한 인력의 배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장애인 편의시설별 체크리스트 제시

장애인 편의시설별 체크리스트는 앞서 제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토대로 ‘공공건물로서의 일반적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와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적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의 항목 선정에 대해서는 국내의 법률적 기준(편의증진법 및 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비교 분석 시 제시된 미국의 ADAAG, UFAS 그리고 ALA에서 발행한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의 설치기준에서 국내의 법률적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국내의

법률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 및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국내의 선행연구 및 관련법률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존 체크리스트에서의 미비한 부분과 추가 할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후속연구로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편의증진법 제정 연도(1997년)를 기준하여 전·후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할 것이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기존 체크리스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공공도서관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로서 추후 국내기준의 개선 및 편의시설 관리에 기준이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정희. 2003.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행태분석에 의한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미국 장애인편의 시설 가이드라인: 건물 및 시설 체크리스트』.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진영. 2001.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전재봉. 2002.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57-173.

한국도서관협회.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원전은 2001에 출판)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2003.

Sannwald, W., William. 2000. *Checklist of Library Building Design Considerations*. Cicago;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U.S.A.. 2002.